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임 만 균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관악구 제3선거구 임만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. 발의한 조

례입니다.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(안 제3조의2 제2항)하였습니다.

관계 법령으로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